

2014년도 청렴도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우리 공사 청렴도 결과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6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청렴도는 외부·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공사는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47점으로 전국 지방공사 34개 기관 중 3위, 도시철도운영기관 중 1위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 측정개요】

- ◆ 2014년도 청렴도 측정 : 8월 ~ 11월
- ◆ 청렴도 산출방식
 -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times 73.5\%) + (내부청렴도 \times 26.5\%)$
 - 외부청렴도 : 외부고객(ARS 설문조사)
 - 내부청렴도 : 내부직원(이메일·스마트폰 설문조사)
- ※ 우리공사는 정책고객평가 설문 해당사항 없음.

2014년도 우리 공사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소폭(0.06점)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도 8.53점)

외부청렴도는 8.78점으로 전년대비 0.07점 상승, 내부청렴도는 7.85점으로 전년대비 0.18점 하락하였으며, 특히 외부부패사례 내부응답(외부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 2건으로 0.06점 감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직원의 기본자세는 청렴과 봉사인 바,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외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청렴도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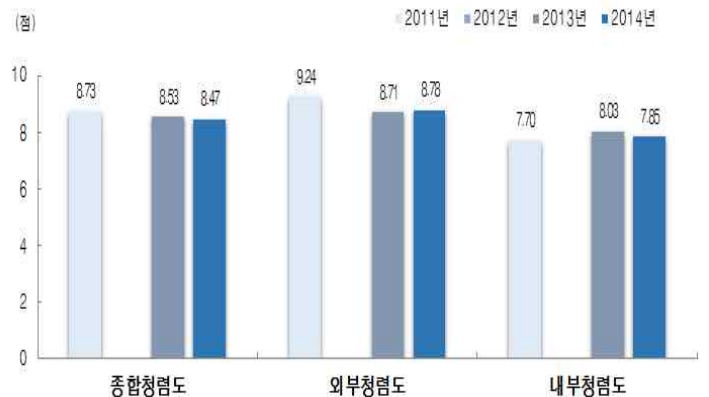
【내·외부청렴도 개선주요항목】

구분		항목	
외부	부패지수	부패인식	금품·향응·편의 제공 간접경험(상가임대, 광고계약 업무)
내부	청문화	조직문화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방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내부	업무청	인사업무	금품/향응 편의 제공 간접경험
		예산집행	운영비·여비위법/부당집행경험률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지시 인식

【우리 공사 청렴도 점수】

연도	등급(순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2011년	II등급(12위)	8.73	9.24	7.70
2013년	I등급(2위)	8.53	8.71	8.03
2014년	II등급(3위)	8.47	8.78	7.85

※ '10~'11년 청렴도 측정결과 II등급 달성, '12년도 면제



청렴도 최우수 기관을 향해 ~

올해 청렴도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내부 청렴도 미흡·취약분야에 역점을 두어 부패방지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반부패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조직구성원의 청렴의식과 청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청렴조직문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어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등극 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도 전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공사 특성에 맞는 사례를 선정, 임직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기관 특성이 반영된 행동강령 조항 내역】

연번	조항(명칭)	내용
1	제6조의 2 제1항 (전관예우 등 금지)	임직원과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 행위 및 식사 사행성 오락행위, 여행금지 등 사적접촉 제한
2	제6조의 2 제2항, (전관예우 등 금지)	임직원과 퇴직자간 비밀유출 방지 조항 신설
3	제6조의 2 제3항 (전관예우 등 금지)	비밀유출시 사전 신고토록 조항 신설
4	제14조 제2항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공용재산 사적사용 수익 시 징벌적 손해배상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가능 토록 조항 신설
5	제16조의 2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에게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시 협찬금지 조항 신설
6	제27조 제3항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 기재
7	제27조 제4항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와 골프 시 별지 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도록 신설
8	제27조 제6항 (골프 및 사행성 오락)	직무관련자와 사행성 오락의 정의 신설
9	제33조 제4항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의 처리결과를 외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조항 개정
10	제34조 제2항(교육)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조치를 받은자에게 청렴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관련 규정 개정

부패행위자 징계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공무국외여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선내용	관련규정 개정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명문화	· 관련규정 : 인사규정시행내규 · 해당조항 : 제51조(징계의 감경)제1항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관련규정 : 인사규정 · 해당조항 : 제38조(의원면직)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부패행위 징계시효 5년)	· 관련규정 : 인사규정 · 해당조항 : 제53조(징계 등 사유의 시효) 제1항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관련규정 : 인사규정 · 해당조항 : 제8조의2(상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관련규정 : 공무국외여행지침 · 해당조항 : 제12조의2(공무국외여행의 제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 외부적발 공개위치 : 공사 홈페이지 · 내부적발 공개위치 : 사내전산망
범죄 및 부패의 고발대상 공금횡령 고발금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	· 관련규정 :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해당조항 : 제4조의2(공무국외여행의 제한)

또한 성실의무 위반(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개별징계양정 기준 별도 마련을 위하여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0-2】 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별표 10-2】 성실 청렴의무위반에 대한 개별기준

징계사유	금 액				비고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1. 성실의무 위반 (공금 횡령·유용)						
가. 공금 횡령	해임		파면		공의·파실 또는 비위의 등의 경우의 파락 기관	
나. 공금 유용	1)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 : 감봉 2)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 : 징직 - 파면					
2. 청렴의무 위반 (금품·향응 수수)						
가.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감봉	징직	해임	파면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징직	해임	파면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해임	파면				

부패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신고제도의 의의

신고란 누구든지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고의 유형

▶ 부패 및 행동강령 위반, 공익신고행위 신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 뇌물수수
- 공금횡령
- 예산낭비

행동강령위반

- 향응제공
- 금품수수
- 알선·청탁

+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침해행위

- 건강·안전 위협
- 환경위협
- 소비자의익 침해
- 불공정 경쟁

- ▶ 2002년 「부패방지법」에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규정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초석마련
- ▶ 2007년 권익위법(구 「부패방지법」)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고자 보호범위를 넓힘
- ▶ 2011년 국민의 건강·안전이나 환경 등 민간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11. 9. 30. 시행)되어 공익 신고 및 보호 범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신고사건 처리결과

	신고서 제출	신고 접수	조사·확인	사건 처리	통지
부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 조사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 사항 및 신고 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발 · 이첩 · 관계기관송부 ·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에게 조사처리 결과 통보
행동강령위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 · 해당공공기관의 장 ·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 사항 및 신고 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강령위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통보 · 이첩 · 관계기관송부 ·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공익침해행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 기업 ·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공공단체 ·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기재 사항 및 신고 내용 등 확인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권 있는 경우 -신고사건 처리 · 조사권 없는 경우 -조사권있는 기관으로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조직의 부패행위 등은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 통제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패행위의 적발 및 규명을 위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직내부문제를 잘 알고 있는 조직 구성원 및 관계인들의 정보 제공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부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배척당하거나,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중요합니다.

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체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체계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	신변보호	그밖의 보호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공개 여부 확인 · 징계요구 (당해기관) · 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경제적 행정적 불이익 처분 금지 ·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 및 권고 · 인사교류요구 · 징계요구 (당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요구 (경찰청,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 신분보호조치 및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감면 · 협조자 보호

◆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 신고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포상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손실을 방지한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공익 신고	보상금	국가 및 지자체의 수입회복·증대시 그 기여분에 대해 보상금 지급
	구조금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정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청렴실천 결의대회 개최

공사 제5대 사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청렴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 다짐과 전 직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본사 5층 대강당에서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도 감사활동은?

- ◆ 설 연휴 복무점검 : 1월 ~ 2월
- ◆ 행락철 기강확립 복무점검 : 4월 중
- ◆ 용역사업 추진실태 특별감사 : 5월 중
- ◆ 상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6월 중
- ◆ 2015년도 市 종합감사 : 6월 ~ 7월
- ◆ 하계휴가철 기강점검 : 7월 ~ 8월
- ◆ 추석연휴 기강점검 : 9월 중
- ◆ 경영본부 소관 일반감사 : 10월 ~ 11월
- ◆ 하반기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 : 11월 중
- ◆ 연말연시 복무점검 : 12월 ~ '16.1월초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 추진

공사의 청렴의지 대외전파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대 시민 홍보활동을 위해 반부패·청렴캠페인을 지난 10월 추진하였습니다.



☆ 부패신고안내 ☆

나의 상담과 신고로 일터가 건강해집니다.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시스템 내에 윤리·감사상담실, 부패(범죄)·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분야에 대한 궁금점 및 신고사항 발생 시 적극 참여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는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에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반드시 감사부서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신고·상담시스템

- ① 홈페이지 (www.gwangsubway.co.kr)
→ 부패(범죄)·공익신고센터
- ② 전자문서시스템 → 게시판 → 청렴마당
→ 윤리·감사상담실, 청탁등록센터
- ③ 본사(4층), 용산·옥동기지(종합관리동 1층)
→ 우편신문고

선물반송 물품 사회복지시설에 기증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이 반송·접수되어 임직원 행동강령에 의거 지난 8월 사회복지시설 2곳(광명노인요양센터, 광산구 노인복지관)에 기증하였습니다.

